2022학년도 고양초등학교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(임시회)

운영위원장	학교장

본회의회의록

1.일시 :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14:30 ~ 15:30
2.장소 : 학교운영위원회실

○ 회 순
1.개회 2.국민의례 3.학교장 인사 4.위원장 개의 선언
5.보고사항 6.안건 심의 7.폐회

○의사일정

순서	심의 안건명
1	유치원 2022학년도 만5세 졸업기념사진 촬영 계획(안)
2	2022 고양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(안)
3	2022학년도 제3차추가경정예산서(안)
4	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(수정)
5	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(안)
6	2023 학사일정 운영계획(안)
7	2022학년도 돌봄교실 겨울방학 운영계획(안)
8	2023학년도 보결수업규정(안)
기타	학교현안

❑ 심의 안건 상정

유치원 2022학년도 만5세 졸업기념사진 촬영 계획(안) — 원안가결

1. 제안이유
제42회 유치원 졸업을 기념하며 개인 학사모 사진 및 단체 사진 촬영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함.

2.주요내용
가. 가. 대상: 유치원 만5세 푸른반 졸업기념사진 촬영 신청 유아(총 11명, 전원 신청)
나. 내용:

종류	내용	금액	비고
개인 사진	개인 학사모 사진(액자)	30,000원	수익자부담
단체 사진	단체 사진	7,000원	운영비지원

다. 촬영업체: 그린 스튜디오. 끝.

3. 심의 내용 : 원안가결

2022 고양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(안) — 원안가결

1. 제안이유
가. 교사, 학생,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기반 마련
나.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올바른 이해 및 적용으로 약속과 규칙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

2. 주요내용
가.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시 필수 검토 사항: 불명확한 조항,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(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)
나. 점검 결과
1)학교 자체 점검 결과(교육청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): 이상 없음(2022.9.19.~9.30)
2)교육청 컨설팅 결과: 이상 없음(2022.11.7.)
다. 의견 수렴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td>1) 학생: 의견 없음.(학생자치회 2022.11.30.)
2) 학부모: 의견 없음.(e-알리미 설문조사 2022.11.24.~11.27)
3) 교원: 의견 없음.(e-알리미 설문조사 2022.11.24.~11.27)
라. 주요개정 내용 : '2022 고양초 학교생활인권규정'현행 유지
마. 홍보 계획
1) 학교 홈페이지 게시
2) 가정통신문 발송

3. 심의 내용 : 원안가결</td></tr>
<tr><td>2022학년도 제3차추가경정예산서(안)</td><td>원안가결</td><td>1. 제안이유
가. 2022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및 총액교부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
나. 신규지정된 목적사업비 및 시보조금 예산편성
다. 사업내 산출내역 조정 및 신규사업 신청

2. 주요내용
[단위 : 천원]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3">세입예산액</th><th colspan="3">세출예산액</th></tr><tr><th>경정예산액</th><th>기정예산액</th><th>비교증감</th><th>경정예산액</th><th>기정예산액</th><th>비교증감</th></tr><tr><td>추경예산</td><td>1,591,576</td><td>1,586,100</td><td>5,476</td><td>1,591,576</td><td>1,586,100</td><td>5,476</td></tr></table>3. 심의 내용 : 원안가결</td></tr>
<tr><td>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(수정)</td><td>원안가결</td><td>1. 제안이유
회계연도 개시전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수립후, 접수된 학교발전기금에 따라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가. 근거: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(학교발전기금), 시행규칙 제47조(기금의 운용) 경기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
나. 주요내용(수정) :
1)수입계획서<table><tr><th>운용계획</th><th>기부자</th><th>수입기간</th><th>수입계획</th><th>사업명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1</td><td>개인</td><td>2022.3.1.~2023.2.28</td><td>1,500천원</td><td>학생장학금지원사업</td><td>원안</td></tr><tr><td>2</td><td>기업(굿네이버스)</td><td>2022.3.1.~2023.2.28</td><td>2,000천원</td><td>학생복지 지원사업</td><td>1차수정</td></tr><tr><td>3</td><td>종교단체(고양제일교회)</td><td>2022.3.1.~2023.2.28</td><td>1,000천원</td><td>학생복지 지원사업</td><td>1차수정</td></tr><tr><td>4</td><td>고양동주민자치회</td><td>2022.3.1.~2023.2.28</td><td>500천원</td><td>학생복지 지원사업</td><td>2차수정</td></tr></table>2)지출계획서<table><tr><th>운용계획</th><th>사업명</th><th>지출시기</th><th>지출계획</th><th>세부사용내역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1</td><td>학생장학금지원사업</td><td>2022.3.1.~2023.2.28</td><td>1,500천원</td><td>학생장학금</td><td>원안</td></tr><tr><td>2</td><td>학생복지 지원사업</td><td>2022.3.1.~2023.2.28</td><td>2,000천원</td><td>학생장학금</td><td>1차수정</td></tr><tr><td>3</td><td>학생복지 지원사업</td><td>2022.3.1.~2023.2.28</td><td>1,000천원</td><td>학생장학금</td><td>1차수정</td></tr><tr><td>4</td><td>졸업생장학금지원사업</td><td>2022.3.1.~2023.2.28</td><td>500천원</td><td>학생장학금</td><td>2차수정</td></tr></table>3. 심의 내용 : 원안가결</td></tr>
<tr><td>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</td><td>원안가</td><td>1. 제안이유
가.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됨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정에 따른 학칙 개정(안)</td><td>결</td><td>나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의거 학교규칙 제·개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학교의 혼선 방지하고자 「경기도교육청 학교규칙 표준안」개정 사항 지침에 따름

2. 주요내용
<table><tr><th>개정 전</th><th>개정 후</th></tr><tr><td>(추가)</td><td>제5장 입학·전학·취학의무의 면제

<u>제25조 (학업중단 예방)</u>
<u>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한다.</u>
<u>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</u>
<u>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「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」에 따른다.</u></td></tr><tr><td>제38조(학교규칙 개정절차)

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.

② 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제30조, 제31조, 제32조, 제33조, 제34조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td><td>제39조 (학칙개정 절차)
<u>① 공(사)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.</u>
<u>②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「경기도 학생인권 조례」제46조에 따라 학부모, 학생,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,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
<u>1.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</u>
<u>2. 재직 교원의 과반수</u>
<u>3. 학부모 대표(학부모회 의결서 첨부)</u>
<u>4. 학생회 대표(학생회의 의결서 첨부)</u>
<u>5.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</u>
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<u>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.</u>
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,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</td></tr></table>3. 심의 내용 : 원안가결</td></tr>
<tr><td>2023 학사일정 운영계획(안)</td><td>원안가결</td><td>1. 제안이유
2023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사일정(수업일수)를 계획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가. 수업일수: 190일(1학기 101일, 2학기 89일)
1) 시업식, 입학식 : 3월 2일(수)
2) 개교기념일 : 5월 1일(월)
3) 학교장 재량휴업일 : 6월 5일(월)
4) 여름방학식 : 7월 26일(수) (1학기 마지막일)
5) 여름방학개학식 : 8월 24일(목) (2학기 시작일)
6) 학교장 재량휴업일 : 10월 2일(월)
7) 종업식, 졸업식 : 2024년 1월 4일(목)
나. 추후 감염병 등 공문의 지침, 학교 사정에 따라 학사 일정 변경 가능함
다. 2023학년도 학사 운영 및 자세한 교육활동 안내는 붙임자료 참고

3. 심의 내용 : 원안가결</td></tr>
<tr><td>2022학년</td><td>원</td><td>1. 제안이유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도 돌봄교실 겨울방학 운영계획(안)</td>
<td>안 가 결</td>
<td>
방학 동안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맞벌이,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2. 주요내용
가. 방침: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설문 조사를 통하여 최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 반영
나. 운영 안내
1) 세부 운영
<table>
<tr><th>기간</th><th>내용</th><th>시간</th><th>참고</th></tr>
<tr><td>1월 5일(목)</td><td>겨울 방학식</td><td>방과 후~17시</td><td>개별도시락 지참(※학교 급식 없음)</td></tr>
<tr><td>1월 6일(목)~10일(화)</td><td>돌봄 방학(3일)</td><td>미운영</td><td>집중 방역, 방학 준비 등</td></tr>
<tr><td>1월 11일(수)~2월 23일(목)</td><td>돌봄교실 운영(30일)</td><td>8:30~16:00
(2:30 이후 1개반 합반 운영 예정)</td><td>특별프로그램(6가지), 여름방학 과제, 기초수학, EBS시청, 그림일기, 예체능 활동 등</td></tr>
<tr><td>2월 24일(금)~2월 28일(화)</td><td>신학기 준비일(3일)</td><td>미운영</td><td>집중 방역, 신학기 준비 등</td></tr>
</table>
2) 운영 대상: 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 희망자(1~2학년) 48명 신청
3) 운영 장소: 서관1층 돌봄교실 3실
4) 지도교사
<table>
<tr><th>담당</th><th>직위</th><th>성명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돌봄교실 운영 및 학생 관리</td><td>돌봄전담사</td><td>권00, 김00, 김00</td><td>방학 중 전담사 연가 사용 시 대체인력 채용 운영</td></tr>
</table>
5) 준비물: 방학 과제 해결을 위한 준비물, 독서록, 필기도구
6) 특별프로그램 6강좌(주5일 오전, 오후 두 시간씩 운영)
- 클레이&토탈공예, 보드게임, 놀이한자, 놀이체육, 창의블럭, 요리교실
7) 급·간식: 수익자 부담 제공, 교육복지대상 무상지원(단,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수량</th><th>단가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중식비</td><td>1식</td><td>5,500원</td><td>* 1인당 165,000원(30일×5,500원) 수익자부담
* 공급 업체: 마미랑푸드
- 업체선정 이유: 소수의 급식 인원과 배달 거리로 인해 급식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임.</td></tr>
<tr><td>간식비</td><td>1식</td><td>1,200원</td><td>* 1인당 36,000원(30일×1,200원) 수익자부담</td></tr>
</table>
8) 급식 환불: 장기간 결석할 경우, 일주일 전 통보 시 1주일 단위로 환불 가능
9) 주의사항
- 개별 도시락(편의점 도시락 및 배달 도시락 등) 점심 식사에 의한 문제 발생 시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식품 안전이 담보된 도시락 지참 필수
- 귀가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행하에 귀가 조치함.

3. 심의 내용 : 원안가결
</td>
</tr>
<tr>
<td>2023학년도 보결수업규정(안)</td>
<td>원 안 가 결</td>
<td>
1. 제안이유
보결수업을 배정받아 수업을 한 전체 보결수업시수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수업 전념 교사의 사기진작 및 학교교육과정 안정화 모색하고자 교원 수업보결수당 지침 개정에 따라 본교 2023학년도 보결수업규정을 개정하고 수업보결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개정 전(2019.12.~2023.2.28.)</th><th>개정 후(2023.3.1. 이후 적용)</th></tr>
<tr><td>기본 방침</td><td>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 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학기 단위로 교사별</td><td>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 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~~학기 단위로 교사별~~</td></tr>
</table>
</td>
</tr>
</table>

구분	개정 전(2019.12.~2023.2.28.)	개정 후(2023.3.1. 이후 적용)
	배정 수업시수를 초과하여 수업을 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 보결 수당 편성 가능	~~배정 수업시수를 초과하여~~ 수업을 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 보결 수당 편성 가능
수당	시간당 10,000원 ~ 15,000원	**현행 유지** **예산 1,800(천원)** **(=시간당 15,000원×30명×4시간)**
수당 지급 조건	출장, 휴가 등으로 인하여 학기 단위 교사별 배정수업시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	정규수업시수에 대하여 보결수업을 배정받아 수업을 한 교사의 전체 보결수업시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유치원의 경우 수당 지급을 위한 수업 '1시간'은 60분으로 정하되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하다.
학급 관리 시간		**(유치원, 초등, 특수 적용)** 1일간 학급 담임을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급 관리의 시간(학생생활지도, 급식지도 등)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 가능(1일 1시간 이내 인정) ※ 경기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준용

3. 심의 내용 : 원안가결

출석 11명/ 7 명 명(정수/참석)						
	학부모위원	박모란	이연미	이영애	이희선	조혜정
		○			○	
	지역의원	박종인(위원장)		김재광		
		○				
	교원의원	최윤자	양정환	이영재	김민경	
		○	○	○	○	
	교직원	이○○, 조○○, 김○○				
	학 생	송○○				